

『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7월 0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7월 09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7월 23일

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

2014년 11월 05일

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-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의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 및 일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

다. 주요내용

- 장기근속자 국내·외 연수 대상 조정(안 제15조제8호가목)
 -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→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검토결과

- 현행 조례상 국내·외 연수대상이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명예퇴직자는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당연퇴직, 의원면직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의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 및 일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